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1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(2110-5641), 정두식 사무관(2110-5644)
박현우 주무관(2110-5640)

오존층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·양수 허용 및 수출관리 강화

-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-

□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(일명 : 특정물질)을 수입하는 기업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·양수할 수 있어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
오존층파괴물질이란?

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*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, 에어컨,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(프레온가스 : 15종), Halon(3종), HCFC(수소염화불화탄소 : 40종), 기타(38종)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

* UN 중심으로 1987년에 채택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,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

○ 이를 위해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·양수를 허용하는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을 10.29일(화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.6일(수)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힘

○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,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

□ 현재,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차규제 특정물질(CFC 등)은 2010년까지 전폐를 완료하고, 2차규제 특정물질(HCFCs)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용 감축을 통해 전폐할 예정

○ 이에 따라, 연차적 감축량을 바탕으로 특정물질 수입기업에 수입허가량을 배정('09~'10년 평균소비량 기준 배분)하고 있으며, 아울러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&D 지원 및 특정물질 사용시설의 대체를 위한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추진중

□ 내년부터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인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,

○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컨설팅 사업,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(전국 7개소)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회수·재활용체계 구축과 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

□ 한편,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(非당사국)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*하고 있으나, 현행 법률에서는 非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

* 의정서 제4조(비당사국 수출금지) 및 제7조(당사국,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입량 보고)

○ 이로 인해,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非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함

* 미가입 국가 수출사례 : HCFCs를 의정서 미가입 국가인 A국(2008년 : 37톤, 2009년 : 18.2톤)과 B국(2012년 : 0.25톤)에 수출

○ 이에 따라,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,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·규정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였음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·관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,

○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두식 사무관(☎ 02-2110-56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주요내용

1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**허가수입량의 양도·양수 규정 신설**

○ 수입업체 간에 수입허가량 양도·양수를 허용하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규제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특정물질시장의 효율성 제고

> 제11조(수입의 허가 등) (신설)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입업자"라 한다)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(이하 "허가수입량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
2 **특정물질 수출 승인제도 신설**, 보고·검사 및 벌칙 조항 추가

○ 특정물질을 수출하는 자는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정서 비당사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의무 위반을 방지

> 제11조의2(수출의 승인)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> 제25조(보고·검사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------ 제조업자, 수입업자,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(이하 "수출업자"라 한다)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3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**당연취소로 규정**

○ 법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 및 부패방지를 위해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, 기존 임의적 허가 취소에서 당연취소 규정으로 변경

> 제7조(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------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4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**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변경**

○ 성년후견·한정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개정 「민법」을 반영하여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자를 "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" → "피성년후견인"으로 대체

> 제5조(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> 1. 피성년후견인

참고 2 우리나라의 특정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현황

1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규제 현황

○ **(1차 규제)**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 '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 금지

- 1차규제 특정물질*인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은 '9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신규 생산 및 수입을 '10년부터 전면 금지

* (1차규제 특정물질) CFCs(프레온가스), Halons, 기타 CFCs, 사염화탄소(CTC), 메틸클로로포름(1,1,1-TCE, '15년 전폐)

○ **(2차 규제)** HCFCs, 13년부터 규제가 시작되어 '30년에 전폐

- 2차규제 특정물질인 HCFCs는 '13년부터 '09~'10년 평균 생산·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'30년에 전폐

CFC (염화불화탄소)	→ 대체	HCFC (수소염화불화탄소)
· 오존층 파괴물질 (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)		· 오존층 파괴물질 (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)
· 한국 '10년까지 전폐 완료		· 한국 '13~'30년까지 전폐 예정
· 냉매,발포,세정 등에 사용		· 냉매,발포,세정 등에 사용

2 **2차규제 특정물질**(HCFC류)**에 대한 국내 감축계획 이행 현황**

○ '13년부터 HCFC류의 국내 생산·소비 감축계획에 따라 '30년 전폐를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감축을 이행

- 우리나라의 기준수량(26천톤) 대비 '13년 동결, '15년 10%, '20년 35%, '25년 67.5%, '30년 97.5%로 단계적으로 감축

○ 기준한도 이행을 위해 수입기업별로 수입허가제('09~'10년 평균소비량 기준으로 배분)를 운영

○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,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수량 內에서 물질간 종류변경 허용

3 특정물질 감축기업 지원 현황

① 대체물질활용 기술개발사업

○ 사업목적 :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

○ 지원현황 : 총 54개 과제, 약 270억원 지원

②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

○ 사업목적 : 특정물질을 이용하는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설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지원

○ 지원현황 : 총 333개 업체, 약 740억원 지원

③ 특정물질 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('14년 신규)

○ 사업목적 : 2차규제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체 전환 촉진 지원 및 회수·재활용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

○ 사업내용 :

-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**기술컨설팅**('14~'20년, 15개업체 내외/년, 총 21억원)
- 선진국 무역규제 및 신규 규제물질의 추가 등의 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**정책연구용역**('14년, 0.5억원)
- 리사이클링센터(전국 7개소)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**회수·재활용체계 구축**과 **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**('14~'18년, 총 23억원)